

JA(Joint Appointment) 교원 인사운영세칙

제정 2005.10. 1 개정 2016. 4.21 개정 2026. 3. 1
개정 2013. 3. 1 개정 2023. 7. 3
개정 2015. 7. 1 개정 2025.11.10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포항공과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 이라 한다) 교원인사규정 제3조에 의거 전임교원 중 Joint Appointment 교원(이하 ‘JA교원’ 이라 한다)의 인사관리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JA교원이라 함은 본 대학 전임교원으로서 학제간 교육 및 연구를 위하여 2개 학과 또는 그 이상의 학과 소속으로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.

제3조(신규채용) ① JA교원을 신규채용하고자 할 때는 원소속 학과와 참여학과 공동으로 후보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
② 후보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장은 “교원 신규채용 운영세칙” 제10조에 따라 1차 평가한 후 평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④ 2차 평가를 위하여 원소속 학과와 참여학과 인사위원이 동수로 참여하는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, 위원장은 원소속 학과의 학과장으로 한다.

(개정: 2026.3.1.)

⑤ 기타 신규채용과 관련된 사항은 “교원신규채용 운영세칙” 을 준용한다.

제4조(재직 교원의 임용) ① 재직 교원이 JA교원으로 임용되고자 할 때는 “별지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현 소속학과의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: 2026.3.1.)

② 재직교원은 소속학과 학과장의 동의와 참여 예정학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여 예정학과 학과장의 추천으로 JA교원 임용을 신청하여야 한다. (개정: 2025.11.10)(개정: 2026.3.1.)

③ 대학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으로 임용을 결정한다.

④ ‘교원인사규정’ 제2조의2에 의한 겸임교수를 겸임학과 JA교원으로 임용할 경우, JA교원 임용일부로 겸임교수 임명을 종료한다. (신설: 2025.11.10)

제5조(소속 및 참여비율) 원소속 학과와 참여학과에 인사발령하며, 참여비율 50:50의 역할 수행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필요시 학과장의 상호협의로 조정할 수 있

다.(개정: 2026.3.1.)

제6조(원소속 변경 및 철회) ① JA교원이 원소속을 변경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“별지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소속 학과의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: 2026.3.1.)

② 현소속학과 학과장은 동의서와 참여학과 학과장의 추천서를 취합하여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필요시 상기의 서류를 참여학과 학과장이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. (개정: 2026.3.1.)

③ 대학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으로 결정한다.

제7조(승진 및 재임용) ① JA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 심의를 위하여 원소속학과와 참여학과의 인사위원이동수로 참여하는 별도의 공동인사위원회를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, 위원장은 원소속 학과의 학과장으로 한다. 단, 참여비율이 40% 미만인 참여학과는 ‘승진 및 재임용 심사의견서’를 제출하여 공동 인사위원회 심의를 대신할 수 있다. (개정: 2025.11.10)(개정: 2026.3.1.)

② 제1항에 따라 공동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, 원소속학과와 공동인사위원회에 참여하는 학과의 승진 및 재임용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 (신설: 2025.11.10)

③ 승진 및 재임용에 관한 절차, 심사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.

제8조(정년보장 심의) (신설: 2015.7.1.)(삭제: 2016.4.21)

제9조(평가 및 보상) ① JA교원은 업적요약서를 원소속 학과와 참여학과 학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.(개정: 2026.3.1.)

② 학과장은 제5조(소속 및 참여비율)에 따라 각각 업적을 평가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.(개정: 2026.3.1.)

③ 업적평가 및 보상과 관련된 사항은 “교원연봉제 운영규정”을 준용한다.

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참여비율과 상이한 평가비율 조정이 필요한 경우, 원소속학과 및 참여학과 학과장간 협의를 거친 후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평가비율을 원소속학과 또는 참여학과로 위임할 수 있다. (신설: 2025.11.10)(개정: 2026.3.1.)

부 칙

이 세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제정·시행하며, 이 세칙 제정 이전에 시행된 것은 이 세칙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세칙 개정시행일 당시 개정 전의 세칙에 따라 임용된 SA교원은 이 세칙에 따라 JA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6년 4월 2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23년 7월 3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세칙은 2025년 11월 10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단 제7조의 승진 및 재임용 심사에 관한 사항은 2026년 3월 1일 이후의 심사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